



2007. 3. 28(수)  
제258회 임시회

#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교육사회위원회

# 심 사 보 고 서

2007.3.22(목)  
제258회 임시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임현 의원 외 9인

나. 발의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07년 3월 2일
- 회부일자 : 2007년 3월 12일

다. 상정일자 : 제258회 충청북도 임시회

- 2007. 3. 22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사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임현 의원)

가. 제안이유

- 「국가보훈기본법」 제정시행(제정일 2005.5.31, 시행일 2005.12.1)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안 제

3조)

-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거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안 제6조 및 안 제7조)
-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보훈정신 함양 등을 위한 각종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 지원(안 제8조)
-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안 제9조)

### 3. 검토보고 요지

(교육사회전문위원 : 이명우)

-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금까지 보훈대상별로 제정된 법률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등 7종의 개별법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2005년 5월 31일 이를 통합한 「국가보훈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정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임
- 따라서,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규정에서 정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써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본 조례 제정에 참고코자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및 제8조(단체지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훈단체와 지원실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충청북도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4조(도의 책무)**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도민의 책무)** 모든 도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희생·공헌자의 예우 및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도가 개최하는 중요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2. 도가 개최하는 중요행사에 희생·공헌자를 초청하고, 초청된 희생·공헌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3. 국가보훈대상자의 위로·격려 및 모범자의 포상
4.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 사업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6.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소개
7. 인물록 등 발간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게재 등

**제7조(복지지원 등)** 도지사는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내에서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2. 도가 설치·운영(“위탁시설”을 포함한다)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감면

**제8조(단체지원)** 도지사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회원의 권익신장 및 보훈 시설건립·개보수 등에 필요한 사업
2. 호국·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및 전적지 순례사업
3. 자원봉사사업과 회원위문 및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제9조(민간의 참여조성)** 도지사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